

● 제278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2. 2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박마루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63

I.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박마루 의원 발의
- 나. 제출일자 : 2018년 2월 8일
-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가.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살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살예방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제7호)
- 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을 부시장과 함께 자살예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함.(안 제8조제2항)
- 다. 민·관협력을 통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라.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규정함.(안 제11조제5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동 조례개정안은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살예방위원회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설치에의 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여 발의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자살자 가족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 동 조례 개정안 제5조제2항제7호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자살자의 가족상담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사회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안임.
- 자살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는 바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예산편성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
- 대법원 1997.9.9. 선고 97추36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동 조례 개정안에서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사회경제적인 지원을 명문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숙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권역별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 동 조례 개정안은 제11조제5항을 신설하여 권역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추48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관리·집행하는데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과 이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을 가지도록 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기구 설치권한을 견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 통폐합의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음.
-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기구의 확대안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보임. 다만,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임.

다. 이 외의 내용에 대한 검토

- 동 조례 개정안 제8조제2항은 자살예방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살예방위원회는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존속기간이 종료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여겨짐.
- 또한 동 조례 개정안 제9조제1항은 민관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자치구 및 민관협력으로 수정하는 안인데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3 종합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할 것이나) 시장의 예산편성권 과 행정기구 설치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여부가 존재하며 집행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이 목표로 하는 권역별 센터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동 조례 개정안의 처리에 앞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짐.